1. 개정이유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의 개선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정비요령의 점검주기를 개선하고, 와이어로프 측정지점 기준을 완화함

2. 주요내용

가.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점검이 실시되도록 궤도시설 점검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2)

나. 궤도시설 안전검사요령의 와이어로프 측정방법 개선에 맞춰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정비요령에도 측정지점을 완화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일부개정고시안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 4. 차량 및 연결장치 다목 “소켓부”를 “접속장치”로 한다.

같은 호 6. 보안설비 나목 “피뢰장치”를 “피뢰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1. 선로 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 “전차주”을 “분기장치”로 하며, 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의 (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트롤리의 마모, 변형유무

(1) 기능 및 작동상태

(2) 전선의 접속불량 및 손상유무 확인

(3) 인터록 회로의 작동여부 확인

같은 호 2. 차량 가목 (2) 중 “트롤리”를 “집전장치”로 한다.

별표 2 제1호 3. 와이어로프 (3) 중 “5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다만,”을 “다만, 측정개소가 10회 이하인 경우는 10회 측정하고,”로 한다.

같은 호 5. 차량 다목 “소켓부”를 “접속장치”로 한다.

같은 호 7. 제동장치 가목 (2), 나목 (2) 및 다목 (3)의 점검내용 중 “리벳

깊이 및 감속도 확인”을 각각 “리벳깊이 확인”으로 한다.

같은 호 10. 보안설비 나목 “피뢰장치”를 “피뢰시스템”으로 한다.

같은 호 12. 절연저항의 점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회로, 제동기, 발전기, 배전반, 전등회로의 절연저항을 측정

(2) 고압주회로, 변압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절연저항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 표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점검항목 중 와이어로프점검표, 접지저항점검표는 6개월마다, 절연저항점검표는 1년에 1회 측정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별표 2 제2호 1.선로 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 “전차주”를 “분기장치”로 하며, 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목의 (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트롤리의 마모, 변형, 부식 유무 및 부착상태

(1) 분기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2) 전선의 접속불량 및 손상여부 확인

(3) 분기장치 인터록 여부 확인

같은 호 2. 차량 가목 (5) 중 “트롤리”를 “집전장치”로 한다.

같은 호 3. 기계장치 가목 (2) 중 “50미터”를 “100미터”로 하고, 나목 “구동활차”를 “구동활차(구동피니언)”으로 한다.

같은 호 5. 제동장치 가목 (2), 나목 (2) 및 다목 (3)의 점검내용 중 “리벳깊이 및 감속도 확인”을 “리벳깊이 확인”으로 한다.

같은 호 11. 시운전 가목의 점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케이블철도는 감속기 출력측(구동활차)이 10회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5회 측정하여 다음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

(산식) 운전속도(m/s)=Π×D×10/t

Π: 원주율(3.14)

D : 구동활차의 지름(m)

t : 구동활차 10회전 소요시간(초)

(2) 모노레일 방식은 차량이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5회 측정하여 다음 산식에 의거하여 산출

(산식) 운전속도(m/s) = 이동거리(m)/소요시간(s)

별표 2 제2호 표 아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점검항목 중 와이어로프점검표, 접지저항점검표는 6개월마다, 절연저항점검표는 1년에 1회 측정하여 점검표를 작성한다.

별표 4의 측정장소란 중 “50미터”를 “200미터”로 한다.

별표 5와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시설명란 중 “피뢰 장치”를 “피뢰 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0의 시설명란 중 “피뢰 장치”를 “피뢰 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삭도시설 절연저항점검표(제3조 관련)

시 설 명		사용전압	회로구분	기 준(MΩ)	측정값(MΩ)	판정	비고
1.고압주회로		KV	L1상-대지				
			L2상-대지				
			L3상-대지				
			L1상-L2상				
			L1상-L3상				
			L2상-L3상				
2.변압기	동력동	V	1차권선-대지				
			2차권선-대지				
			1차-2차권선				
	전등제어용	V	1차권선-대지				
			2차권선-대지				
			1차-2차권선				
3.저압주회로	동력동	V	L1상-대지				
			L2상-대지				
			L3상-대지				
			L1상-L2상				
			L1상-L3상				
			L2상-L2상				
	전등및제어용	V	L1상-대지				
			L2상-대지				
			L3상-대지				
			L1상-L2상				
			L1상-L3상				
			L2상-L2상				

시 설 명	사용전압	회로구분	기 준(MΩ)	측정값(MΩ)	판정	비고
4.전동기	V	1차 권 선 - 대지				
		2차 권 선 - 대지				
		기동저항기-대지(리액터)				
5.제동기	V	E.C.B 권선-대지				
		전자제동기 권선-대지				
		유(공)압전동기 권선-대지				
6.발전기	V	L1상-대지				
		L2상-대지				
		L3상-대지				
7.배전반	V	주개폐기- 대지				
		보조개폐기 -대지				
8.기타	V					
	V					
	V					
	V					
	V					

90㎜×268㎜
(신문용지 54g/㎡)

[별표9] 궤도시설 절연저항점검표(제3조 관련)

시 설 명	사용전압	회로구분	기준(MΩ)	측정값(MΩ)	판정	비고
1.저압주회로	V	L1상-대지				
		L2상-대지				
		L3상-대지				
		L1상-L2상				
		L1상-L3상				
		L2상-L3상				
2.전동기	V	1차권선-대지				
		2차권선-대지				
		기동저항기-대지(리액터)				
3.제동기	V	전자제동기 권선-대지				
		유(공)압전동기 권선-대지				
4.발전기	V	L1상-대지				
		L2상-대지				
		L3상-대지				
5.기타	V					
	V					
	V					
	V					
	V					

190㎜×268㎜

(신문용지 54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 ----- 2024년 7월 1일-------- ---------- -- 6월 30일---------- ---------- ----------.